

의안번호	2212059
의 퇴 인	황정아 의원
회 답 일	2025. 9. 10.
추계번호	25F43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술 추가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추가 －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인공지능 분야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	
2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공제율을 확대 － (현행) 일반기술과 동일하게 기업규모별 1~10% ※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에 한하여 - 신성장·원천기술로 인정 → (개정안) 기업규모별 30~40%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인공지능 분야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포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

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)

- 국가전략기술*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 및 통합 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
- ※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

[표 1]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¹⁾ 비교

(단위: %)

	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	
				반도체 외	반도체
R&D 세액공제	중소기업	25	30~40	40~50	
	중견기업 ²⁾	8~20	20~35	30~45	
	대기업	최대 2	20~30	30~40	
통합투자세액공제	중소기업	10	12	25	30
	중견기업 ²⁾	5~7.5	6~9	15~20	20~25
	대기업	1	3	15	20

주: 1) 표의 공제율은 당기 R&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

2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,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국가전략기술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
-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R&D 세액공제율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기업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인상
- ※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현재 일부 기술(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)을 제외 하고는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음

[표 2]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¹⁾ 비교: 현행 및 개정안

(단위: %)

	R&D 세액공제		통합투자세액공제	
	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
중소기업	25	40~50	10	40
중견기업 ²⁾	8~20	30~45	5~7.5	30~35
대기업	최대 2	30~40	1	30

주: 1) 표의 공제율은 당기 R&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

2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에 대한 범위와 해당 기술의 R&D 및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R&D 지출액 및 시설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중 공제율이 인상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은 현행 동법 시행령 [별표 7]에 따라 신성장·원천 기술로 지정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제외하고는 일반기술로 규정되어 향후 관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여부를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 - 또한, 개정안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한 요건도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공제율이 인상되는 시설투자의 범위를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 - 또한,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규모별 R&D 지출액 및 시설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R&D 지출액 및 투자액과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료¹⁾에 따르면,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NHN Cloud가 운영하고 있는 ‘국가 AI 데이터센터’(광주), KT Cloud가 운영하고 있는 ‘경북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’(경북 예천) 등이 있음
 - 이외에도 울산(SK텔레콤), 구미(삼성SDS) 등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, 현 시점에서 향후 연도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계획 등 공제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

III. 부대의견

- 없음

1)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, “AI 데이터센터 동향과 시사점,” 2025.7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